

용인시 시보 발행 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14호
개정 1998. 10. 17 규칙 제141호(직제규칙)
2001. 3. 16 규칙 제260호
2001. 12. 24 규칙 제292호
2005. 10. 5 규칙 제41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용인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발행일)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및 발령, 고시, 공고,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3조(규격) 시보의 규격은 10절로 하며, 가로쓰기를 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4조(편찬구분과 그 순위)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례란
2. 규칙란
3. 훈령란
4. 예규란
5. 인사란
6. 자치법규 입법예고란
7. 고시·공시란
8. 공고란
9. 행정란
10. 기타란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5조(행정란) “행정란”에는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시정을 신는다.

제6조(인사란) “인사란”에는 용인시 공무원의 임면, 전직, 휴직,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는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용인시 시보 발행 규칙

제7조(게재의뢰) 시보 게재 의뢰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1. 조례(사본) 2부
2. 규칙(사본) 2부
3. 훈령(사본) 2부
4. 예규(사본) 2부
5. 기타사항(사본) 2부

제8조(배부기준) 시보는 시 본청,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,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,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9조(시보의 보급)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0조(시보의 공문대체)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에서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1. 조례·규칙의 공포
2. 훈령·예규의 발령
3. 인사발령 통보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3. 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1. 12. 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15호>

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05. 10. 5>



용인시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관의 장
람	

제 호
년 월 일()

차 례									
조		례							
규		칙							
훈		령							
예		규							
인		사							
자치법규입법예고									
고		시							
공		고							
행		정							
기		타							
회	람								

발행 : 용인시

편집 : 공보실

용인시 시보 발행 규칙

[별표 1-1]

용 인 시 보

제 호

